

#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제3056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2. 10. .  
제출자 문화예술과장

## 1. 제안이유

- 디지털 뉴미디어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여 나가고자 “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”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나.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시설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다.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사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및 제8조)
- 라.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마.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- 바.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현행 자치법규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별첨
  - 1) 2022년도 제3회 추경 15억 원 반영
  - 2) 2022년 : 시설비 및 부대비 도비 15억원 보조(도비 50%, 시비 50%)
  - 3) 2023년 이후 : 운영비 편성(시비 100%)
- 다. 그 밖의 사항
  - 1) 입법예고
    - 가) 예고기간 : 2022. 9. 2. ~ 9. 13.(11일)
    - 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2) 부서협의결과

- 가) 규제사전심사 : 해당 없음
- 나) 성별영향분석 : 원안 동의
- 다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- 라) 소비자정책심의 : 해당 없음

3) 중앙 및 도 관련부서

- 가) 중앙부처 : 문화체육관광부
- 나) 경 기 도 : 콘텐츠정책과

##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김포시민의 영상문화 향유와 미디어 체험 등 영상·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영상미디어센터”란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 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 및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김포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에게 제공하는 교육, 제작, 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.

**제3조(명칭 및 소재지)** ① 명칭은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③ 센터는 김포시 모담공원로 170 김포아트센터 내에 둔다.

**제4조(센터의 기능)**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미디어교육
2. 무료영화 상영, 독립예술 영화 상영 등 영화관 운영
3. 시민 미디어 활동을 위한 창작지원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
4. 방송·영상·미디어 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
5. 시민, 1인 창업, 미디어 관련 기업을 위한 장비, 시설의 대여·대관
6. 장애인, 노인, 다문화 가정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체험
7. 그 밖에 지역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5조(시설)**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교육공간: 강의실 등
2. 제작공간: 스튜디오, 편집실, 녹음실 등

3. 창작지원공간: 상영관, 동아리회의룸, 세미나실 등
4. 그 밖의 공간: 사무실, 회의실, 기자재실 등

**제6조(사용신청 및 허가)**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기 최소 3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신청을 할 경우 신청내용 검토 후 허가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시간대에 신청이 겹칠 경우 선착순에 따른다.

**제7조(사용료 및 수강료)**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강의를 듣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(이하 “사용료등”이라 한다)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중복 감면은 할 수 없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: 면제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: 면제
3. 「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: 면제
4.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: 면제
5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: 50퍼센트 감면
6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: 50퍼센트 감면
7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: 50퍼센트 감면
8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: 50퍼센트 감면
9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: 50퍼센트 감면
10. 「김포시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」 제2조2에 따른 다자녀 가정: 50퍼센트 감면

③ 제2항제5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, 실비가 발생하는 장비 사용료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.

**제8조(사용료등의 반환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

1. 전부반환

가. 천재지변,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

나. 김포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

다. 시설 사용자가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의 취소를 신청하여 그 사유가 인정된 경우

라. 매 강좌별 교육의 첫 개강일 전일까지 수강 포기원을 제출하는 경우

2. 일부반환 : 수강생이 매 강좌별 교육 개강 후 수강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제출일까지의 수업 횟수를 제외한 남은 수업 횟수에 대한 수강료

**제9조(관리 및 운영)** 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, 지방공기업 또는 단체(이하 “수탁관리자”라 한다)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②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「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등을 따른다.

**제10조(재정지원)** 제9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운영비는 센터 사용료 등으로 충당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.

**제11조(지도감독)**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관리자에게 센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, 감독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, 감독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.

③ 수탁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하여진 기간내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문화예술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성명	문화예술과장 이 경 희
	팀장 직위·성명	예술팀장 윤 선 영
	담당자 성명·전화	지방행정주사보 이 영 진(☎2318)

**지역문화진흥법**

[시행 2022. 7. 19.] [법률 제18780호, 2022. 1. 18., 일부개정]

- 제8조(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·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·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-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

**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**

[시행 2022. 7. 19.] [대통령령 제32805호, 2022. 7. 19., 일부개정]

- 제2조(생활문화시설의 범위)** 「지역문화진흥법」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.
1.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
  2. 「평생교육법」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
  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
  4.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

##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

[시행 2018. 3. 9.] [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-16호, 2018. 3. 9., 일부개정]

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생활문화를 위하여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음 시설을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생활문화시설로 본다.

1. 생활문화센터 :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는 문화시설
2. 지역영상미디어센터 : 지역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·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시설
3. 지역서점 :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(서점 전용면적의 1/10)과 설비를 갖추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의 독서동아리 운영, 저자초청 특강, 전시 및 공연 등 문화행사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서점

# 비 용 추 계 서

## 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「김포시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0조(재정지원)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김포시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

## 2. 비용추계

가. 비용추계의 전제

- 경기도 지역미디어센터 설립정책의 일환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함

나. 비용추계결과

(단위: 천원)

구 분	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계
총 소요액		3,000,000	420,000	478,000	486,000	515,000	4,899,000
운영비	인건비	-	210,000	218,000	226,000	235,000	889,000
	운영비	-	109,620	110,000	110,000	120,000	449,620
사업비		-	100,380	150,000	150,000	160,000	560,380
시설비 및 부대비		3,000,000	-	-	-	-	3,000,000

※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

다. 재원조달방안 : 2022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

- 기획담당관과 협의필

## 3.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

- 해당없음

4. 작성자 :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과장 이경희 팀장 윤선영